

간호법 대안을 모색하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운영을 위한 해결 과제-

2023. 7. 6.

이주열 교수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목 차

1. 간호법 입법 논의과정
2. 간호법 대안 모색
3.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
4.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간호법 입법 논의과정

간호법 발의 역사1

제17대 국회(2개 법안, 폐기)

1. 2005년 4월 27일,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간호사회 설치, 간호사의 역할 및 정의 및 자격 및 의무, 전문간호사의 정의 및 책임 등
2. 2005년 8월 24일, 박찬숙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 보건복지부 내 정책심의위 설치, 요양방문간호/건강교육/경미진료행위는 독자 판단 허용, 간호요양원/가정간호센터 독자 개설 허용 등

제20대 국회(3개 법안, 폐기)

1. 2018년 1월 11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지자체별 취업교육센터,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한국간호인력공제회 설립 등
2. 2019년 4월 5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대표발의, 간호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보건복지부의 정기 실태조사, 간호사회 설치,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3. 2019년 4월 5일,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간호사/조산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간호사/조산사의 정의 및 자격, 간호기록부 의무화, 간호사회-조산사회 설립, 보건복지부의 정책심의위 설치, 정기 간호인력지원종합계획, 정기 실태조사, 표준 보수지급기준 설정, 간호인력지원센터 설치 등

간호법 발의 역사2

제21대 국회(3개 법안)

1. 2021년 3월 25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간호사/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2. 2021년 3월 25일,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3. 2021년 3월 25일,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대표발의, 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를 의료법에서 독립
- 2021년 11월 23~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개 간호법 발의안에 대해 첫 심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번 심사(2022년 2월 10일, 4월 27일, 5월 9일) 후 3개 간호법을 하나의 법으로 합침
 - 2023년 4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가결
 - 2023년 5월 4일, 국회 통과한 간호법이 정부로 이송
 - 2023년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 2023년 5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원안 최종 폐기

간호법 관련 언론보도 주요 내용

1. 제17대 국회 (검색기간: 2005.04 ~ 2006.12)

2. 제20대 국회 (검색기간: 2018.01 ~ 2020.12)

3. 제21대 국회 (검색기간: 2021.03 ~ 2023.06)

제21대 국회 간호법 입법 논의과정

전문가 좌담회(2021.5)

국회 공청회(2021.8)

찬성 의견: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한국간호교육
평가원

반대 의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조무
사협회



**해외 간호제도를 통해 본
간호법안
전문가 좌담회**

일시: 2021. 5. 20 (목) 14:00 - 17:00
장소: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홀)
You Tube <배진교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

좌장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발제
윤태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이사장

토론
연호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송재찬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조용형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
구성자 대한간호협회 전문위원
최충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김시영 아시아투데이 사회부 부장
왕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과장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배진교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ICRC 불평등과 시민성연구소

후원: **보건복지부**
문의: 배진교 의원실
(6788-6552)



간호법안 제안 이유 & 발표자 의견

-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
 -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 제정
 -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참고)
- 간호법이 미래 지향적 방향을 제시하였지만 구체적인 내용(무엇을, 어떻게)은 부족하고, 간호사 역할은 강화시키면서 간호조무사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시켜 간호사법으로 한정되었음.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 규율은 관련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간호인력만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보건의료 생태계를 위협하였음. 고령화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필요한 법률은 간호법이 아닌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이라고 생각함

노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개념

1. 의료서비스

- 노인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2. 요양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신체활동·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서비스

3. 돌봄서비스

-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가사·일상 생활지원, 신변·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서비스 등

4. 통합서비스

-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등을 서로 연계 및 조정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

간호법 대안 모색

현재 법률 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1

□ 의료법

-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행위에 관하여 규율하는 기본법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 지역사회에서 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료인 역할, 서비스 체계 등에 관한 별도 법률이 필요함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함

현재 법률 검토를 통한 대안 모색2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별도 임상교육과정(임상전문간호사)을 통하여 의료행위 관련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가능

□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① 간호조무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2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간호사 업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간호조무사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대체 인력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제도 개편이 필요함

→ 2013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개편 방안(전문대: 1급, 특성화고 및 학원: 2급) 활용

간호법 대안 정책 기본 방향1

□ 의사 중심의 질병치료 의료체계에서 보건의료인 중심의 예방 및 돌봄 체계 강화

-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인력, 예산 등 국가 보건의료체계 개편
- 첨단 과학기술 접목된 AI 등을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에 도입
-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재편성

□ 노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보건의료기본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 근거 제시
-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담당 인력 제시
-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 제정

간호법 대안 정책 기본 방향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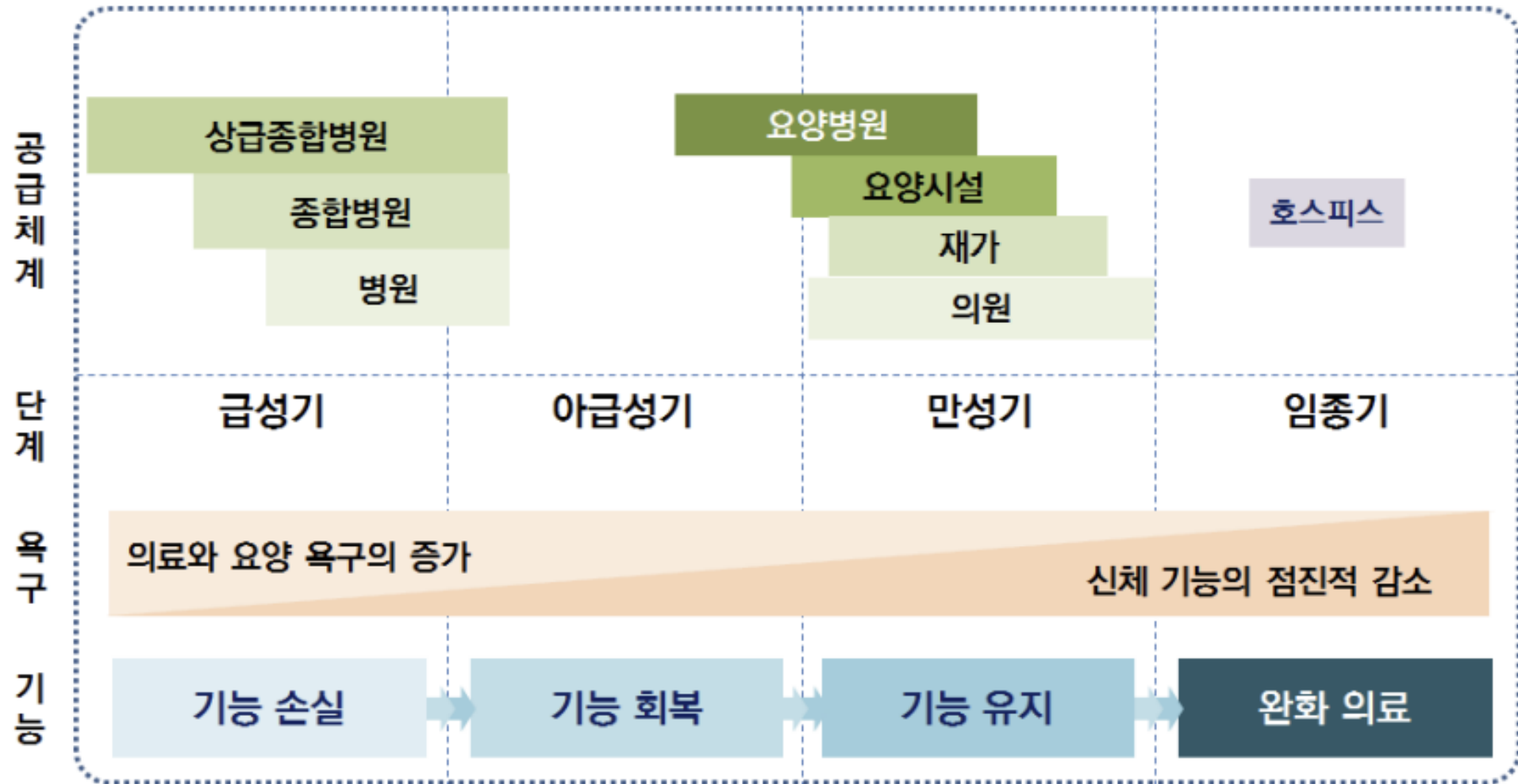
□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병 인력의 업무 조정을 위한 직무 재설계

-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의 세부 업무 범위 구체적으로 정리
- 의사는 처방 및 치료와 관련된 고난이도 업무만 담당, 의사 업무 중 간호사에 이관 가능한 업무 발굴
- 간호사 업무 중 간호조무사에 이관 가능한 업무 발굴 및 복지서비스와 업무 연계 방식 개발
- 이관 업무 담당 가능한 인력의 필수요건 및 양성교육·시험 과정 개발

□ 요양병원 및 1차 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참여

- 노인 대상의 요양·돌봄은 복지적 접근 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와 연계되어야 함
-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운영체계 수립
- 방문의료와 요양·돌봄 담당 인력(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간 업무 연계 방안 수립

노인 대상 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요구

		의료 요구			
돌봄 요구	높음	②	높음		낮음
			고의료, 고요양 의료요양통합기관 (요구) 지속적인 의학적 치료 및 장기 입소 동시에 필요 (현황) 요양시설 입소 중 별도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거나 요양병원 선택 (대안) 의료 기능이 강화된 요양서비스 제공기관 필요	③	저의료, 고요양 요양시설 (요구) 장기 입소를 통한 생활. 요양서비스 필요 (현황) 약 10%는 요양병원 입원(경증환자) 선택 (대안) 불필요한 입원정지 및 요양시설 선택 동기 향상을 위한 요양시설 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연계 강화
	낮음	①	고의료, 저요양		저의료, 저요양
			복귀형 요양병원 (요구) 단기간집중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필요 (현황) 50% 이상이 요양병원장기입원(180일 이상) (대안) 고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후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 수립. 관리를 위한 공급 체계 개편	④	커뮤니티케어 확대 (요구) 지역사회의 적합한 돌봄서비스 이용 및 지원 필요 (현황) 50%이상이 요양병원 입원 혹은 요양시설 입소 (대안) 지역사회 노인의 안전한 생활과 보호를 위한 공식 연계. 조정 체계와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확충

출처: 김윤(2021). 노인돌봄체계 혁신 방안-보건의료서비스 모형.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 고의료 영역은 의사 중심으로, 저의료 영역은 일정한 임상경력 및 임상교육과정을 이수한 가정간호전문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병 인력과 협업하여 서비스 제공

간호법 대안, 누가 수립할 것인가?

□ 보건복지부는 혁신 의지도 문제 해결 능력도 부족

-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면 조직 확대에만 관심(질병관리청, 복수 차관 신설 등)
- 장관은 보건의료 생태계 특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부족
- 보건의료 분야 다양한 직역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 부재
- 주권자인 국민에는 관심 없고,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과거 방식(추진단, 협의체, 직역 단체 방문, 재탕·3탕 긴급 대책 발표, 홍보용 현장 방문 등)으로 업무 추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1안) 또는 국무총리실 내(2안) 민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 15인 이내로 구성된 민간위원회가 전권을 갖고 추진
- 민간위원회가 정책 설계 및 법률안 1차 작업 후 관련 각 직역 단체들과 세부내용 조율
- 보건복지부는 민간위원회의 행정 및 실무 업무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법률

법률 제정 필요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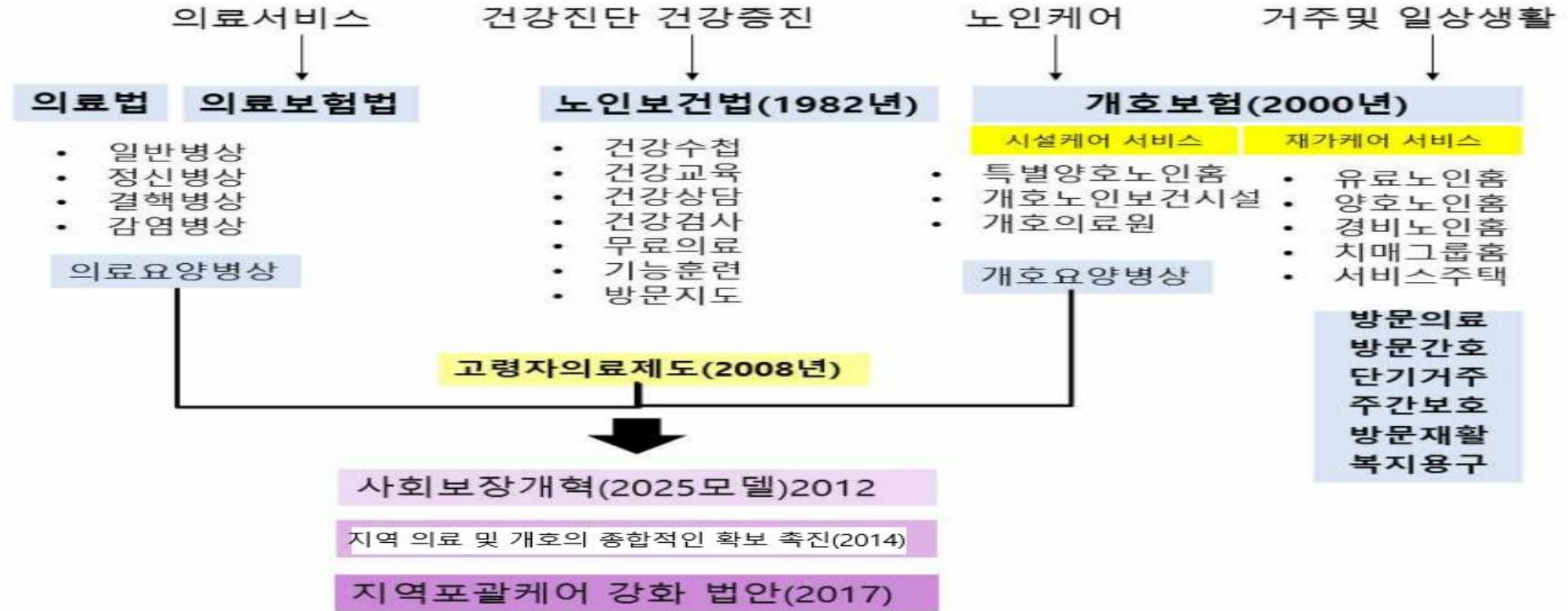
-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각각 독립적인 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각 기관의 입소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입소자 특성이 일부 중복되고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여 의료기관으로의 입원과 퇴원 반복 및 장기입원 등 문제 발생,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지만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차별성이 정립되지 못하여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혼재되어 있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음

법률 제정 필요성2

-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양질의 서비스를 필요한 기간에만 한정하여 제공
 -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여 환자의 자립 능력 배양시켜 조속히 지역사회 복귀 유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 요양 및 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서로 연계 및 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 필요함

일본의 노인 관련 법 및 제도 사례



□ 보건, 의료, 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본에서는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2014년에 「지역 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지역포괄케어 강화」법 제정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

□ 노인 대상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내용

- ①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및 욕구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적절하게 제공
- ②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가지는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 구축
- ③ 노인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④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⑤ 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시책 추진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① 통합서비스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
- ②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의 정책 개선 사항
- ③ 통합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④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⑤ 통합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 ⑥ 의료기관 입원환자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관한 사항
- ⑦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 ⑧ 의료기관과 장기요양기관의 관계 정립
- ⑨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에 따라 지역노인의료요양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고려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 ①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어야 함
- ②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 통합평가

□ 노인이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또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실시함

- ① 노인이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을 희망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또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요양·돌봄서비스의 필요도에 대한 통합평가를 거쳐야 함. 다만, 이미 입원 또는 입소한 노인과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 받은 경우는 제외함
- ② 통합평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③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평가결과에 따른 이용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음
- ④ 평가기준, 평가도구, 평가방법 및 평가절차,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이용절차 등 세부 운영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주기적 환자평가 실시

- 요양병원의 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 노인에 대하여 의료 필요도, 요양 필요도 및 경제·사회적 요소 등을 포함한 환자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① 요양병원의 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 노인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를 의뢰하거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② 환자평가와 관련하여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절차, 입소 의뢰 및 입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과 노인의 서비스 이용이 각 기관의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의 입원 또는 입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필요도 또는 요양 필요도 등 이상이어야 함
 - 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필요도 등 이상이어야 함
 - ②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평가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 필요도 등 이상이어야 함
 - ③ 요양병원의 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 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④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요양병원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뢰와 회송

- 의료기관의 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에게 의료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서비스 등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해당 기관에 입원 또는 입소하고 있는 노인이 퇴원 또는 퇴소하는 경우에는 퇴원 또는 퇴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내에 각 서비스와의 연계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① 요양병원의 장은 입원 노인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 받은 의료기관은 서비스 제공 종료 시 노인을 의뢰한 의료기관에 회송하여야 함
- ② 요양병원의 장은 입원 노인이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요양서비스 제공 또는 입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에 회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소 노인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서비스의 제공 또는 입원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종료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회송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④ 의뢰 및 회송과 관련된 기준 및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지역 의료·요양서비스 제공

- 입원 노인이 퇴원 지원계획에 따라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 5에 따른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음
- 요양병원의 장은 퇴원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연계 또는 의뢰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입소 노인이 퇴소 지원계획에 따라 퇴소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2호의 재가급여를 실시하거나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연계 또는 의뢰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방문요양급여의 범위와 방법 및 절차, 의료서비스의 연계 또는 의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감사합니다